

오키나와현민의 권리의식*

—門中과 남계 상속의 관념에 대한 연구—

新 里 惠 二**

目 次

- I. 처음(강연을 하게된 이유)
- II. 중국의 종족과 한국의 門中 · 오키나와의 門中
- III. 위패와 男系相續의 관념
- IV. 정치적 테마에 대해서 권리의식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권리에 대한 권리의식
- V. 끝맺음(제주도민의 권리의식은?)

I. 처음(강연을 하게된 이유)

1999년 3월 25일~27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 「日韓 法律家 交流會」가 열렸다. 그 준비의 과정에서 新崎盛暉(前 오키나와 대학 학장)이 나에게 제주대학교에서 오키나와 현민의 권리의식에 대해서 강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책임자가 없으면 내가 강연할 수 있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 제주도는 「고려왕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는 놓여있지 않았고, 독립된 탐라왕국으로서 본토와는 느슨한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다」였다. (『제주도 4·3 봉기』 14 쪽).

오키나와현의 前身인 류큐왕국도 또한 1609년 島律(사무라이 단체)가 류큐에 들어온 것은 일본본토와는 다른 독립국으로써 후진적인 역사의 발자취를 반복해왔다.

※ 1477년 제주도 선박이 오키나와 최남단의 島与那國섬에 표착했다. 『이조실록』에 수록된 표류민의 견문기는 오키나와 역사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2) 한국과 오키나와에는 같은 문증으로 불려지는 중국 종족으로부터 男系혈연집단이

* 이 논문은 '99년 6월 7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법의식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임.

** 일본 오키나와현변호사회 변호사

있고, 그곳으로부터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門中은 한국에서는 문중이라고 발음되고, 오키나와에서는 몬쥬라고 발음된다).

전형적인 것으로써 한국에서는 同姓不婚의 원칙과 非嫡出子の 문제가 있고, 오키나와에서는 위패의 남성승계와 상속으로부터의 여성 배제의 문제가 있다.

(3) (2)번과 같은 일상생활의 이익에 관련된 법률문제와 미군기지반대 등의 정치적 테마로써는 오키나와 현민의 권리의식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전자에 둔감하고, 후자에 민감한 상태이다).

(4) (1)번 내지 (3)번에서 보면은 오키나와 현민의 권리의식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서 내가 강연할 것은 미진하지만 다소간의 학문적 소양과, 변호사이지만 평소 오키나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내가 어쩌면 적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불려진 오키나와에서 권리의식에 대해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제주도의 연구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앞서 말한 두 나라의 호칭은 양 국민이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조선국왕이나 류큐국 中山왕이 중국황제에 대하여 책봉·조공의 예의를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는 이 기회에 오키나와 출신의 宮良高弘氏(삿쵸로 대학교수)가 집필한 「韓·琉 門中制度의 비교」라고 하는 논문을 한번 더 읽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한국 양반 동족제의 연구』, 1982년 第1書房刊).

II. 중국의 종족과 한국의 門中·오키나와의 門中

한국의 문중과 오키나와의 문중은 어느 것이나 男系血緣집단으로 함께 중국 종족제도를 계승·섭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한국의 문중과 오키나와의 문중은 『주자가례』가 토대가 된 책).

그러나 두개의 문중을 抱懷하는 개념에는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다.

오키나와의 문중에는 동성불혼의 개념은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오히려 농촌에 있어서는 村落內婚이 원칙이다(三品彰英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族內婚도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한다). 문중이 男系혈연집단으로 있었던 것에 반하여 오키나와에서는 하라우지라고 불리는 雙系혈연집단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아버지 쪽의 혈통의 친족도 어머니 쪽의 친족도 똑같은 비중으로 친족으로서 대우된다.

촌락내혼이라고 하는 원칙과 아버지 쪽 혈통의 친족과 어머니 쪽 혈통의 친족도 같은

비중으로 친족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는 원칙이 더해지면 촌락 내가 모든 친척이 되어버려 순수한 혈통을 가려내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와 같이 「봉쇄성의 강한 촌락」은 류큐왕국을 「백성의 폭동도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위와 같은 촌락구조와 친족구조는 전 근대 류큐왕국의 기초구조 이었고 현재 오키나와에 남는 「負의 遺産」이다.

※ 이 부분의 서술에 대해서는 比嘉春潮·霜多正次·新里惠二 공저 『오키나와』(岩波新書, 青B 100) p.105~p.112를 보십시오.

Ⅲ. 위패와 男系相續의 관념

한국의 상속제도는 자녀 균분 상속제이다. 일본의 경우, 戰前은 家督상속제로 장남이 단독으로 家督과 家産을 상속했다. 전후의 민법개정(1948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 균분 상속제가 되었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1948년 당시는 미군지배하에 있었고 일본 본토와 法域을 별도로 해 있었기 때문에 신민법의 적용은 없었다.

조국회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57년 1월 1일부터 신민법과 同一의 규정이 입법원에서 입법되고 신민법이 오키나와현에도 시행되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는 이것과는 다른 전근대적인 관습이 있었다.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키나와 변호사회가 1980년 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앞에 내걸었다(직접 집필·起案者는 당시 오키나와 변호사회 부장이었던 新里惠二).

위패와 男系相續問題에 관한 성명 오키나와 변호사회

주지한 바와 같이, 최근 신문지상에 소위 위패와 男系相續문제에 대해서 보도와 논평이 행해지고 이것을 둘러싼 토의가 沸騰하고 있다. 오키나와 변호사회는 위의 문제를 단지 習俗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권문제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思料하고 토의의 결과 오키나와 변호사회의 견해를 左記의 표명한다.

記

1. 주지한 바와 같이 舊民法에 있어서는 상속은 가독상속의 형태로 행해지고 한편 원칙으로서 '장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속제도는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하고 법률적으로는 헌법 제 24 조가 정한 1948년 민법친족·상속편의 전면 개정이 행해지고 상속은 재산상속의 형태를 취해 남녀에게 관계되지 않는 균분상속의 원

칙을 취하게 되었다(오키나와에 있어서도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위의 구분상속의 예외로 있는 것은 민법 제 897 조가 정한 祭具의 계승에 있어서 同條에 의하면 「계보·제사 및 분묘의 소유권은 … … 관습에 따라서 선조의 제사를 주재해야 하는 사람이 이것을 계승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위의 제사주재자는 제1차적으로는 피상 속의 제정에 의해 제2차적으로는 관습에 따라서 관습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정재판소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서 장남이 아니면 계승할 수 없다라든가 계승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라든지 하는 법규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 897 조의 법규는 재산은 공동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예외적인 법규가 있으며 민법의 정신은 재산은 남녀 별도로 관계되지 않고 균분히 상속하고 系譜, 祭具 및 墳墓 등의 대해서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계승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3. 右 1, 2의 이념에 비취볼 때 오늘 오키나와의 일부에 있어서 행해지고 있는 ①위패의 계승자가 전 재산을 상속한다. ②위패의 계승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등의 관습은 신민법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상반하는 것만 아닌 헌법 제 24 조의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은 관습이 여러 해에 걸쳐 전근대적인 관습으로써 오키나와의 사회에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 관습들은 민법 제 90 조의 정한 공의 질서, 선량의 풍속에 위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속법은 친족 공동생활의 질서에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강행규정으로써 임의대로 규정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前記한 바와 같이 관습은 민법 제 92 조가 정한 「사실인 관습」으로써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4. 근대의 과학적 연구의 성과에 의하면 위패와 男系相續의 관념의 역사적 기원은 그 정도 오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게다가 雙系の 민족집단은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남계상속의 관념은 당초 久米·首里의 系持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슈리, 나하, 오키나와 本島 중남부에 있어서는 어떻든 정착하고 있지만 오키나와 本島 북부, 周辺諸島, 古宮, 八重山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볼 수 없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昭化의 初年까지 딸에게 남편을 맞이하게 하고 딸과 사위가 祭祝主宰者 및 재산의 실질적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의해서 보고되고 현재에도 그와 같은 종래의 관습을 남겨두고 있는 지역은 많다. 이와 같은 법사회학적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위패와 남계상속의 관념은 결코 오키나와 古來의 미풍양속이 아닌 불과 200년 전후의 시기에 그것 이전의 남녀평등의 관념을 밀어내고 오키나와의 일부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近年, 오키나와 본도 周辺諸島에도 남계상속의 관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슈리, 나하로부터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한편 이들의 도입은 모두 무속인의 指導에 의한 것

이다.

5.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 하는 오키나와 변호사회는 이상과 같은 일본 헌법 및 신민법의 이념에 위반하는 관습을 승인·방치할 수는 없다.

오키나와 변호사회는 같은志를 가지고 있는 婦人團體·人權保護團體와 협력해서 이와 같은 관습을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데 결의를 표명한다.

뒤이어 이 문제의 피해자들로부터 오키나와 변호사회 혹은 오키나와 변호사회소속의 변호사에게 법률상속이 있었던 경우는 그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는 소유로 있는 것을 아울러 표명한다.

1980년 2월 14일

오키나와 변호사회

회장 本 永 寬 昭

문중제도에 얽힌 위패와 남계상속의 관념은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

- i) 남자를 낳지 못하는 처와의 이별
- ii) 남자 출산을 위해 畜妻의 習俗
- iii) 본처의 소생녀에 대한 庶子男의 우선적인 계승
- iv) 多産에 이어지는 男子 出産의 강제
- v) 양자조직의 강제

江守五夫 교수는 논문 「오키나와에 있어서 祭祀繼承에 관한 사회문제-법사회학적 = 민족학적 리포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가족의 역사민족학·동아시아와 일본』 所收, 1994년 弘文堂 刊).

— 뒤이어 1975년 國際婦人年에 들어서 勞働省은 일본 國運協會와 共催로 「남녀평등과 부인의 사회참가」에 관해서 전국으로부터 작문 혹은 의견을 모집했지만 오키나와로부터 入選作은 1980년의 시점에서 오키나와 부인연합회 부회장 이었던 中村文子씨(66세)의 체험기 「관습 타파의 길은 험난하다」였다.

「『또 여자인가』— 이 노골적인 한마디에 산모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의 文으로부터 시작하는 中村(나카무라)씨의 体験記는 위패의 계승을 명심하여 지키는 「一門」(門中)의 규칙으로의 呪祖의 외침을 계속하고 있다. 氏は 「好運에도 여성이 훌륭한 남성을 운명적으로 만나 데릴사위를 얻어서 가문을 이어간다」 것이었지만 「一門(門中)이 아닌 남자와 결혼한 딸이 선조 대대로의 위패를 잇는 것은 당시의 봉건적 관습으로부터 하면 이단자적 행위였을 것 같다」. 「선조의 靈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졌다 『박식하다』라고 불려지는 인재들로부터 친척을 통해서 이의를 따지게 되었다」. 그러나 中村氏は 門中の 압박에 대항하여 위패를 지켜나갔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中村氏의 수기는 오키나와 여성의 門中적 제사 승계의 관습에 대해서 든 최초의 “반항의 표시”였다.

하지만 모처럼 이 “표시”도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다. 中村氏도 슬회하고 있는 — 「내가 이것을 쓴 5년 전, 신문이 게재하자 격려의 전화랑 편지가 많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먼 파도소리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문중제도가 너무나도 강력히 이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실제, 1977년 7월에 오키나와 婦人 少年室 協助會員이 실시한 「婦人에 관한 생활과 의식 앙케이트」는 門中적인 제사 승계를 지지하는 사상 동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오키나와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특히 「家(위패)의 후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의 질문항목이 부가되어 있지만 이 질문항목의 집계에 의하면 「長男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回答者가 남성 27.7%, 여성에 있어서 33.3%. 「딸이라도 좋다」의 항목에 답한 사람은 남성의 14.5%, 여성의 25.4%를 각각 상회하고 있다. 만약 「장남에 한정한다」에 「二男·三男이라도 좋다」와 「혈연의 남자에 한정한다」의 2항목을 첨가해서 부계 혈연 남자의 승계를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남자 79.0%, 여자 65.9%인 거의 4분의 3에서 3분의 2의 비율에 달하는 것이다.

이 집계에서는 상세한 지역별의 통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의 분석은 할 수 없지만 門中的 가족의식이 강력히 잔존하고 있었던 것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의 『류큐신보』의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라든지 종래의 退嬰的 풍조와는 일변하는 반응이 일어났다. 婦人團體를 시작으로 하는 각종의 단체가 캠페인에 호응하고 인습타과의 운동을 開始했다. 新報紙의 《오키나와의 女男》이 위패를 문제삼은 1월 14일부터 3일째인 1월 17일, 오키나와의 婦團協, 즉 15단체가 가맹하는 「國際婦人年行動計劃을 실천하는 오키나와현 부인단체 연합협의회」는 위패문제를 운동의 주목표로 하는 것을 결정한다.

오키나와 변호사회도 활동하고 2월 14일에 이사회에서 협의의 결과 「위패와 남계상속 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표 했다. 本聲明은 「오늘 오키나와의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① 위패의 승계자가 전 재산을 상속한다 ② 위패의 승계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등의 관습은 新民法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상반하는 것만이 아닌 헌법 24조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엄하게 右慣習의 위법성을 규탄했다.

게다가 同月29일 오키나와 인권협회도 총회를 열고 선언을 채택하고 「위패문제 등 습속에 관계된 인권문제랑 남녀평등 등에도 적극적으로 맞붙어서 결의를 새롭게 한다」 취지의 성명과 함께 또한 同B. 「오키나와에 있어서 婦人문제·위패를 둘러싼 관습과 인권」을 테마로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리고 3월 8일, 婦團協의 주최로 「국제부인 데이 — 오키나와현 집회」가 열려서 위패에 관한 어필이 全會 일치로 채택되어 그것에 이어받아 “위패 문제의 심포지엄”(정식 주제 「남녀평등을 향한 오키나와의 관습을 또 한번 고침시다·위패는 여성이라도 이어받는다」)가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에 들어서면서 제사 승계의 관습은 오키나와의 一大 사회 문제가 되었다.

IV. 정치적 테마에 대해서 권리의식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권리에 대한 권리의식

나는 강연 「위패와 남계상속」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복귀운동이나 미군에 대해 저항하는 것, 教公二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사회적인 면에서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割과 오키나와 사람들은 戰後 특수한 사정으로부터 대단히 예민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신변 적인 문제,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외로 권리의식이 높지 않고, 또는 확실한 계몽활동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한 바 신변 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 버렸습니다만 以前은 어린이들이 일요일에 병에 걸리면 어떤 병원에 가도 진찰해 주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2, 3 년전에는 하루건너 물이 나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감상을 말하자면 대개 이틀에 한번밖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물 부족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위대의 미사일이 소록기지에서 폭발한 때에는 여러분 대단히 화가 나서 여러 가지 聲明을 내거나 운동을 하셨지만 지금과 같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으로 있는 것이라든지 권리 라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오키나와의 경우는 일본 국민전체가 享受하고 있는 편익의 정도와 비교해 보면, 격차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노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 권리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위와 같이 민감하고 신변 적인 일상적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일까, 법률가로서 혹은 역사가로서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V. 끝맺음(제주도민의 권리의식은?)

「일본의 국토면적의 약 0.6%를 넘지 않는 협소한 현토면적에 전국의 미군전용 시설의 약 75%가 집중해 있고, 이들 미군기지는 현토면적의 약 22%, 특히 인구, 산업이 집중하는 (오키나와) 本島에 있어서는 실제 20%를 점하는 이상한 상황하에 있다」(1998년 7월 6일 付오키나와현 의회의 전회 일치의 의견서로부터).

우리 오키나와 현민은 위의 사태를 일본 본토가 우리들에게 억압한 역사적 차별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동경에는 거대한 橫田기지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일본민족에 있어서 굴욕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新崎盛軍 오키나와 대학교수는 작년 여름 한국에서 在日 미군 기지 문제와 일·미 地位協定の 문제에 대해서 강연한 점에 대해서는 청중의 높은 관심을 끌어 모았다고 합니다.

冒頭に 언급한 올해 3월 25일~27일의 「日韓 法律家 交流會」를 在日 미군 기지의 集中해 있는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것 그리고 新崎교수의 강연이 하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右의 「日韓 법률가 교류회」에서는 韓米 지위협정의 방법이 日米지위협정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과 在韓 미군인과의 사이에 혼혈아의 국제문제나 교육문제도 화제로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在韓 미군기지의 반환요구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법률가들로부터 경위보고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권리의식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에 대해서 권리의식과의 사이에는 역시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같은 지에 대해 敎示를 얻으면 다행히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문제제기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 『세계 역사 사전』(平凡社, 조선의 項)
 『세계백과 대사전』(平凡社, 제주도의 項)
 존 멜 著, 문경수 역 『제주 4·3 봉기』(1988년 新韓社)
 比嘉春潮·霜多正次·新里惠二 『오키나와』(1963년 제 1 刷, 1996년 제 9 刷 발행, 靑B 100)
 江守五夫·崔龍基 편 『한국 양반 동족제의 연구』(1982년 제 1 書房, 5,000円)
 김달수 『朝鮮』(岩波新書)
 江守五夫 『가족의 역사민족학·동아시아와 일본』(1994년, 弘文堂)
 류큐신보 편 「Toutoume 考」(1980년 류큐新報社)
 國際婦人年行動計劃을 실천하는 오키나와현 부인단체 연락협의회 편 『Toutoume는 여성이
 라도 이어받는다』(1981년 KK新報出版)
 小葉田涼 편 『이조실록 중세 琉球자료』(잡지 『南島』第 11 韓)